

서울고등법원 2016. 4. 14 선고 2014나204603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6. 3. 10.

판결 선고 2016. 4. 14.

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3가합53760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,464,210원 및 그 중 182,630,260원에 대하여 2012. 9. 21.부터 2013. 10. 2.까지는 연 11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80%는 원고가, 2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338,701,956원 및 그 중 1,147,237,746원에 대하여는 2012. 8. 10.부터, 182,630,260원에 대하여는 2012. 9. 21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11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,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,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1,338,701,956원(=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1,147,237,746원 +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82,630,260원 + 채권보전비용8,833,95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의 외화예금계좌에 우리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대출금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할 예치금이 있었고, 원고가 위 예치금으로 위 대출금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 없이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

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2009. 1. 30. 우리은행과 사이에 피고가 유엔(UN)과 체결한 수출계약의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'수출보험공사 발행 보험증권 보험금액 상환용 수출대금 외화예금계좌 관리 업무협약서'를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와 유엔간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대가로 유엔이 은행에 송금한 수출대금 중 수출보험공사 발행 보험증권 보험금액의 상환에 대비하고자 계약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시점 이후부터 회수대금 건별로 5%이상 계좌에 예치하기로 약정한 사실, 원고는 2009. 1. 30. 원고가 보증하는 보증금액 500만 달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데, 위 증권에는 특기사항으로 "보험증권의 보험금액 상환을 대비하여 피고와 우리은행 사이에 위와 같이 수출대금의 일부를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."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, 원고의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·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"은행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신용보증부대출의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, 부금,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(제17조 제1항)."고 규정한 사실, 피고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위 업무협약서에 따라 수출대금 외화예금계좌(우리은행 C)에 수출대금의 5%를 예치하였고, 2012. 6. 17. 당시 우리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잔액인 미화 1,017,054.74달러를 초과 하는 미화 1,193,700.860달러(이하 '이 사건 예치금'이라 한다)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, 원고는 피고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2012. 7.경 우리은행에 이 사건 예치금과 우리은행의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한 상계 등에 관하여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실, 그런데우리은행은 2012. 8. 1. 이 사건 예치금과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일반대출금채권과 상계하고, 원고에게는 수출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1,017,054.74달러에 해당하는 1,147,237,746원을대위변제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, 이 사건 예치금은 원고의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우리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대출금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예치한 것으로, 피고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업무협약서, 원고가 발행한 위 수출보증보험증권,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관 등에 의하여 우리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의 상환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

것인데, 원고는 우리은행의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으로 위 대출금 채권에 우선 충당할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도,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, 이러한 경우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20174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82,630,260원과 채권보전비용 8,833,950원의 합계 191,464,2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82,630,26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2. 9. 2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3.10. 2.까지는 약정 이율 상당인 연 11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다60954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부분은 기각되는 부분과 소송물을 달리하므로,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,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특레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, 판사 임영우, 판사 최한순